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학 의원 대표발의]

의 번	안 호	1136
--------	--------	------

발의연월일 : 2019. 10. 10.

발의의원 : 구자학 의원, 이대곤의원,
김은영 의원

1. 제안이유

“재난취약계층”에 속하는 주민의 정의를 확대하여 기초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세대의 정의를 ‘만 65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 제27조 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로 개정하고(안 제2조제6호)

나. 아동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세대와 그 밖에 달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재난취약 계층에 추가
(안 제2조제7호, 제8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만 65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

제2조에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아동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세대
8.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제1항 중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노 인 ☐ 대리양육 세대 ☐ 가정위탁 세대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		☐ 소방 ☐ 기타()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6. 만 65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 로 사는 노인 세대
7. <신설>	7.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아동 대리양 육 또는 가정위탁 세대
8. <신설>	8.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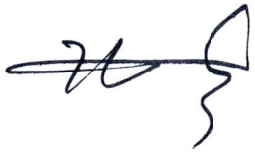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발 의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구 자 학	구 자 학	
이 대 곤	이 대 곤	
김 은 영	김 은 영	